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9.

제 안 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개정안의 전복·화재 사고 위험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“적재 상태 등”, “선내 기관, 설비 및 연료 취급 등”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다적재, 관리소홀의 문구를 넣어 명확하게 수정하고, 경미한 자구를 수정함.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1조제1항제5호 중 “적재 상태 등으로”를 “어획물, 연료, 어구의 과다적재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선내 기관, 설비 및 연료 취급 등으로”를 “어선 기관, 설비 및 연료의 관리소홀로”로 한다.

안 제49조제1항제10호 중 “통지한 자”를 “통지한 경우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1조(안전조치) ①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(이하 “안전 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 야 한다.	제31조(안전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31조(안전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 음)	1. ~ 4. (개정안과 같음)
<신설>	5. <u>적재 상태 등으 로 인한 어선의 복원성 저하에 따른 전복 사고 위험</u>	5. <u>어획물, 연료, 어구의 과다적재 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
<신설>	6. <u>선내 기관, 설비 및 연료 취급 등 으로 인한 화재 사고 위험</u>	6. <u>어선 기관, 설비 및 연료의 관리 소홀로</u> ----- -----
5. (생략)	7. (현행 제5호와 같음)	7. (개정안과 같음)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제49조(행정처분) ①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은 「수산업법」에 따른 어업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나 면허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 또는 양식업의 허가, 면허, 신고, 등록(이하 “어업허가등”이라 한다)업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업허가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업허가등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	제49조(행정처분) ① -----	제49조(행정처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1. ~ 9. (개정안과 같음)

<u><신 설></u> <u>10.</u> (생 략) ② (생 략)	<u>10. 제21조제2항을</u> <u>위반하여 안전본</u> <u>부에 위치통지를</u> <u>하지 아니하거나</u> <u>허위로 통지한</u> <u>자</u> <u>11. (현행 제10호와</u> <u>같음)</u> ② (현행과 같음)	10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통지한</u> <u>경우</u> 11. (개정안과 같 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
--	---	---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7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5.

발 의 자 : 조경태 · 김선교 · 서천호
서범수 · 서일준 · 안상훈
박충권 · 박성훈 · 김 건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선어업의 재해율은 6.21%('24년)로 전체산업 평균인 0.67% 대비 약 9.3배 높은 수준이고, 최근 5년간 어선 362척에서 총 467명의 인명피해(사망·실종)가 발생했으며, 이 중 전복·화재 사고는 총 47척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2.4%(105명)가 동 사고로 발생하였음. 현행 법령에는 추락·충돌·끼임·잠수작업 등 선내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만 반영되어 있고,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의 전복·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없어 동 사고로 어선원이 사망하더라도 안전책임자의 처벌이 되지 않는 등 실효적 관리 방안이 부재함. 이에 적재 상태, 기관·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).

또한, 현행법은 어선이 위치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. 그런데 위치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선사고 시 위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구조가 힘들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 시 현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·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9조, 제58조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개정안의 전복·화재 사고 위험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“적재 상태 등”, “선내 기관, 설비 및 연료 취급 등”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다적재, 관리소홀의 문구를 넣어 명확하게 수정하고, 경미한 자구를 수정함(안 제31조, 제49조).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어획물, 연료, 어구의 과다적재로 인한 어선의 복원성 저하에 따른 전복 사고 위험

6. 어선 기관, 설비 및 연료의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 사고 위험

제49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경우

제58조제3항 중 “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·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.

1.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·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
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1조(안전조치) ①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“안전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5. (생략) ② (생략)	제31조(안전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어획물, 연료, 어구의 과다적재로 인한 어선의 복원성 저하에 따른 전복 사고 위험</u> 6. <u>어선 기관, 설비 및 연료의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 사고 위험</u> 7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49조(행정처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「수산업법」에 따른 어업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나 면허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	제49조(행정처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당 어업 또는 양식업의 허가, 면허, 신고, 등록(이하 “어업허가등”이라 한다)업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업허가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업허가등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10. (생략)

② (생략)

제58조(과태료) ① . ② (생략)

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·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경우

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8조(과태료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----
-----.

1.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·시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
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(생략) 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<u>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</u> 3. ~ 8. (생략) ⑤ ~ ⑦ (생략)	<u>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</u> ④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3. ~ 8. (현행과 같음)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